

# 2019년도 제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12.(금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용준(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40건(안전번호 제2019-13160~1486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3160호) 및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촬영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게시물 1개 안건(제2019-13162호)은 심의시점 현재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네이버 밴드 게시물에 첨부파일로 게시한 5개 안건(제2019-13163호~제2019-13167호)은 해당 밴드가 심의시점 현재 폐쇄되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2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찬성함
- C 위원 :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도 찬성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은 그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3160호~1486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340건임  
안전번호 제2019-13160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이고, 안전번호 제2019-13161호는 네이버TV에서 최신 일본드

라마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3162호는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촬영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안이고, 안전번호 제 2019-13163호~13167호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네이버 밴드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3168~148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단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160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전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본 사안은 일반인이 익명으로 보호원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대용량 메일 서버에 저장된 일본 영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설정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B 위원 : 게시물의 '평'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평'은 내용을 삭제한 후 기재하는 인터넷 용어임
- C 위원 : 게시물 제목의 '하이앤로우'가 작품명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영화 정보를 보여주면서)'하이앤로우 더 무비 2 엔드 오브 스카이(2017)'가 작품명이며, 현재 아마존에서 블루레이와 DVD로 판매되고 있음

- B 위원 : 게시물이 현재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됨
- A 위원 : 현재 삭제된 게시물이더라도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함
- C 위원 :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서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160호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점 현재 이미 삭제되어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161호 네이버TV 채널에서 공유한 일본드라마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 2019-13161호는 일반인의 익명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저작물이 게시된 네이버TV 채널은 다수의 일본드라마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판매 안내 웹페이지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2019년 6월 21일부터 판매 예정임

- B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C 위원 :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161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162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3162호는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녹화한 것으로 이른바 '캠버전' 게시물이고 심의시점 현재 게시물은 삭제되어 있음
- C 위원 : 캠버전의 특징에 대해서 질의함
- B 위원 :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녹화한 것이고, 저화질이며 음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 삭제된 게시물의 자진삭제 여부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자진삭제 여부는 알 수 없고, 웹하드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것을 수시로 반복하는 경우도 많음

- A 위원 : 게시자가 웹하드에서 해당 불법복제물을 완전히 삭제한 것인지, 다른 게시물로 다시 올린 것인지는 알 수 없음  
현재 삭제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최신 영화의 캠버전을 올린 사안은 명백한 시정권고 대상이나 현재 삭제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이견 없이 경고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162호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 조치만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3163호~13167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밴드는 밴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친목 도모보다는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 당시 밴드가 이미 폐쇄되어 있었음
- A 위원 : 밴드가 현재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이 타당함

- B 위원 :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나, 현재 해당 밴드가 폐쇄되었으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 운영자가 해당 밴드를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밴드 자체가 폐쇄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3163호~13167호는 해당 밴드가 심의 시점 현재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  
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장일치로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13168호~14862호는 웹하  
드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 C 위원 : 명백하게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가결 의견에 동의함
- 전용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168호~14862호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의결하기로 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3161호, 제2019-13168호~1486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3160호, 제2019-1316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안전번호 제2019-13163호~1316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전용준 분과위원장이 제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9.

분과위원장 전용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